# 수급자 신체제재의 상세기록부터 보호자 통보 과정

1-1.수급자관리 > 표준약관 > 안전관리 통지서의 경우에 평가기준의 신체제재 관련된 필수확인사항이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체제재 및 통보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시 필수로 제공하실 의무는 없으십니다. 안전관리통보의 제공은 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필요시에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평가시에는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급자 신체제재에 따른 사항은 아래 과정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박성, 비대체성, 일시성 등의 사유 및 급여제공시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휠체어안전밸트, 난간 처리 등의 조치를 하실 경우에는 역시 신체체제 사유에 해당되므로 2-4.신체제재 기록 메뉴를 통하여 [신체제재 신규등록] -> 작성 -> 상세내역기록 -> 통지등록까지하여 보호자께 최종 통보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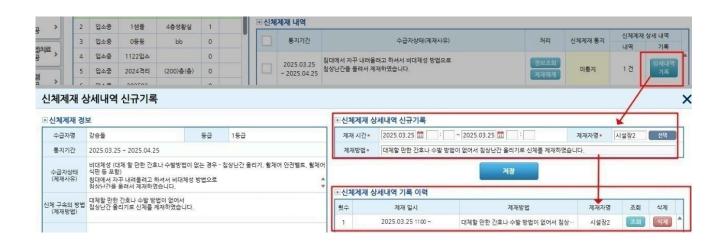
그리고 신체제제가 해제된 후에 몇일 후에 다시 동일한 신체제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동일한 단계로 기록하시면 보호자 통보까지 완료하셔야만 평가시에 인정되겠습니다.

아래 진행 단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4.신체제재 등록 > 신체제제후 필수 항목에 즉시 기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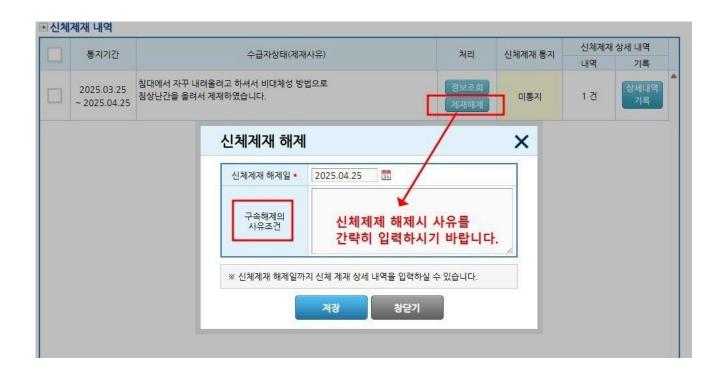
#### [2-4.신체제재에 대한 상세내역 기록]



#### [2-4. 신체제재 기록후에 즉시 보호자에게 통지 (통지방법:전화, 문자, 직접설명)]



#### [신체제재 해제시에 사유 입력]



## [[ 공단에서 제공된 다빈도 Q&A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설급여 평가지표19(18) 노인인권보호

Q59

신체제재 시, 보호자에게 제재 시작 전 한번만 통지하면 되나요? 제재를 할 때마다 통지를 해야 하나요? 또는 보호자에게 급여 제공계약서에 서명을 받을 때 제재동의서를 받아도 되나요?

- O 신체제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일괄적으로 받은 동의서의 경우 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 수급자의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사유 발생 시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했는지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확인사항: 수급자명, 수급자상태(제재사유), 제재일시, 제재자명, 제재방법, 통지대상자명(관계), 통지일시, 통지방법
- O 해당 제재 사유가 발생한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만약 제재가 종료된 후에 다시 제재를 해야 할 경우 다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로 통지한 뒤 동일한 사유가 계속 유지되어 제재를 하는 경우는 통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시설급여 평가지표19(18) 노인인권보호

Q60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구체적으로 제재는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예를 들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침대난간을 올리기, 휠체어에서 미끄럼방지를 위한 안전벨트를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되나요?

- 불가피하게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한 모든 경우에 대해(침상난간 올리기, 휠체어 안전벨트, 휠체어 식판 등 포함)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가족 등에게 통지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때 확인하는 '내용'은 경과기록이 아닌 제재에 대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 침상난간, 휠체어 안전벨트, 휠체어 식판의 항목은 낙상위험을 보완할수 있는 제재로 입소 시 침대 및 휠체어 이용 예정임에 따라 제재시작으로 보고 제재기록 및 통지를 수행할 경우 인정됩니다.(타 억제대는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에 제재 및 통지를 했는지 확인)

## 시설급여 평가지표19(18) 노인인권보호

- Q61 비위관(L-tube)을 손으로 빼는 행동을 반복해서 신체제재를 적용하는 경우, 식사시간마다 가족에게 통지해야 하나요?
  - O 해당 제재 사유가 발생할 시 통지해야 하며, 만약 제재 사유가 종료된 이후 다시 제재를 해야 할 경우 다시 통지해야 합니다.
  - O 다만, 최초로 통지한 뒤 동일한 사유(예 : 비위관을 손으로 빼는 행동을 계속함)가 계속 유지되어 제재를 하는 경우는 최초 통지를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 시설급여 평가지표19(18) 노인인권보호

- Q62 억제대를 최초로 시행했을 때 보호자에게 통지했고 현재도 동일한 억제대를 하는 상황이면 매 해마다 통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 O 통지 간격에 대한 평가기준은 없으나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해 기관의 운영방침에 맞추어 시행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동일한 억제대 사용이 동일한 사유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억제대라고

하더라도 타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존사유가 중단된 후 동일한 사유로 재적용 시에는 가족 등에게 통지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